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42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42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453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형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변론종결 2021. 10. 27.

판결선고 2021. 12.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453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식회사 E이 2019. 4. 4. 피고에게 한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8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F이 2019. 4. 4. 피고에게 한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8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1)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 '피고 D'을 각 'C', 'D'으로 각 고친다.

○ 5면 21행부터 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가 F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E과 F이 서로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E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는 E이 F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는 E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피고는 F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E도 채무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2호증(차용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F 명의의 차용증만이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② 피고는 E이 F에게 지급할 돈을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것(단축 급부)이라면서도, E이 F에게 돈을 지급할 법률관계로 E의 F에 대한 가수금 변제, 가지급금 지급, 금전 대여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송금 당시 E이 F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8면 19행의 “법률상 원인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를 “타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행위”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완, 판사 배용준, 판사 정승규

1) 제1심 공동피고 C은 항소를 하였다가 2021. 11. 30.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